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2019. 10. 25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**1. 심사경과**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7일

-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의결)

**2. 제안 설명 요지**

(제안설명자 : 안석영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하였던 도민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,

○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도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항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
-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3조, 제14조)
-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항목의 변경 및 추가(안 제6조, 제12조 등)
- 전자민원 창구 운영 항목의 추가(안 제8조)
- 인터넷 민원접수 항목의 변경(안 제9조)
-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항목의 변경(안 제 16조, 제18조 등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곽영학)

- 이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하였던 도민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,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.
- 주요 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“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”를 “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”로 변경하고,
  - 안 제3조와 제14조에서는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,
  - “인터넷민원”을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 “전자민원”으로 변경하고,
  -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인터넷초창기에 도입하였던 이메일시스템을 폐기하고, 현재 시스템 운영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, 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8호의 “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”를 “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”로 변

경찰 경우 도민의 게시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.

○ 또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반면, 개정하지 않는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- 제2조제1호, 제2호 및 제8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- 제2조제5호, 제6호 및 제7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- 제6조제2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“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”을 “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”로 한다.
- 제13조제3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- 제13조의2제3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- 제5장을 삭제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의결”

○ 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8호 규정을 수정안 이전의 규정대로 하고,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.

○ 수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 (정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인터넷”이라 함은-----</li> <li>2. “인터넷시스템”이라 함은---</li> <li>5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-----</li> <li>6. “비밀번호”라 함은-----</li> <li>7. “홍보행사(이벤트)”라 함은---</li> <li>8. “인터넷방송”이라 함은---</li> </ol> <p>제6조 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생략)</li> <li>② -----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-----</li> <li>8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</li> </ol>	<p>제2조 (정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7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8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제6조 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생략)</li> <li>② (현행과 같음)</li> <li>8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</li> </ol>	<p>제2조 (정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인터넷”이라-----</li> <li>2. “인터넷시스템”이라---</li> <li>5. “개인정보”라-----</li> <li>6. “비밀번호”라-----</li> <li>7. “홍보행사(이벤트)”라---</li> <li>8. “인터넷방송”이라---</li> </ol> <p>제6조 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생략)</li> <li>② -----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-----</li> <li>8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</li> </ol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</u></p> 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 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<u>민원 사무처리</u>에 대한-----</p> <p>제13조(참여마당 운영)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-----</p> <p>제13조의2(인터넷 방송 운영)  ③ ----- 가입자에게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제5장 전자우편 ID보급</u></p>	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 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참여마당 운영) 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의2(인터넷 방송 운영) 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<u>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</u></p> 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 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<u>민원 처리</u>에 대한-----</p> <p>제13조(참여마당 운영)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<u>범위에서</u>-----</p> <p>제13조의2(인터넷 방송 운영)  ③ ----- 가입자에게 예산의 <u>범위에서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(삭제)</p>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원안)」
- 「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」

의안번호	제 27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원안)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하였던 도민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,
-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항 변경 (안 제1조, 제2조)
-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조항 삭제 (안 제3조, 제14조)
-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항목의 변경 및 추가 (안 제6조, 제12조 등)
- 전자민원 창구 운영 항목의 추가 (안 제8조)
- 인터넷 민원접수 항목의 변경 (안 제9조)
-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항목의 변경 (안 제 16조, 제18조 등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있음

##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”를 “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 ”홈페이지”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”를 “ ”홈페이지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전자민원“이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목적이나 성향”을 “목적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단체, 부서를”을 “단체 및 행정기관을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8호 중 “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”를 “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9호 중 “기타 연습성”을 “연습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 
제8조제1항 중 “인터넷으로 민원을”을 “전자민원을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전자민원 창구는 인터넷 민원접수”를 “전자민원 창구는 전자민원 접수”로 한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인터넷 민원접수)”를 “(전자민원 접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인터넷 대상민원”을 “전자민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터넷 민원접수”는 “전자민원 접수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제18조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<u>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 1 조 ( 목 적 ) ----- ----- <u>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</u>--- ----- ---</p>
<p>제2조(정의)</p> <p>3. <u>"홈페이지"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3. <u>"홈페이지"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-----.</u></p>
<p>4. <u>"인터넷 민원"이라 함은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.</u></p>	<p>4. <u>"전자 민원"이라 함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.</u></p>
<p>5. <u>"개인정보"라 함은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</u></p>	<p>5. ----- <u>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제1호</u> <u>에 따른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한 정보를 말한다.	-----.
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	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전자우편 ID 이용	<삭 제>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	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2. 정치적 <u>목적이나 성향</u> 이 있는 경우	2. ----- <u>목적</u> -----
3. 특정기관, <u>단체, 부서를</u>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	3. ----- <u>단체 및 행정기관을</u> -----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8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<u>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</u>	8. ----- <u>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</u>
9. <u>기타 연습성, 오류, 장난성</u> 의 내용 등	9. <u>연습성</u> -----
<신 설>	10. <u>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</u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</p> <p>① <u>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</u>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·운영한다</p> <p>② <u>전자민원 창구는 인터넷 민원접수 및 공개,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, 민원사무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</u></p> <p>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</u></p> 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</p> <p>① <u>전자민원을---</u></p> <p>② <u>전자민원 창구는 전자민원---</u></p> <p>-</p> <p>③ <u>현행과 같다</u></p> <p>④ <u>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9조(<u>인터넷 민원접수</u>)</p> <p>① <u>인터넷 대상민원은 민원의 종류,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</u></p> <p>② <u>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,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</u></p>	<p>제9조(<u>전자민원 접수</u>)</p> <p>① <u>전자민원은 ---</u></p> <p>② <u>전자민원 접수는---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립한다.</p> <p>제12조(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)</p> <p>①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도지사와의 대화방을 운영한다.</p> <p>② 도지사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고,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·처리한다.</p> <p>제14조(전자우편 ID보급) ① 도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지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고, 보급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전자우편 ID보급·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.</p> <p>제16조(개인정보보호) ① ~ ② 생략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<u>정한다.</u></p>	<p>제16조(개인정보보호) ① ~ 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<u>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다</u>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----- -----<u>정할 수 있다</u></p>

# 충청북도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·운영하고자 함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통합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활동의 소요 경비 등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1조 (목적), 제2조 (정의), 안 제3조 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
- 안 제6조 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, 안 제8조 (전자민원 창구 설치 운영)
- 안 제9조 (인터넷 민원접수 항목의 변경)
- 안 제12조 (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)
- 안 제14조 (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사항), 제16조 (개인정보보호)
- 안 제18조 (시행규칙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연중

### 나. 추계 결과

- '19년부터 향후 5년간 연 420,000천원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비 10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구 분	계	1차년도 (2019년도)	2차년도 (2020년도)	3차년도 (2021년도)	4차년도 (2022년도)	5차년도 (2023년도)
세 출	2,10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

## 6. 작성자 : 행정국 정보통신과 과장 유경수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도)	2차년도 (2020년도)	3차년도 (2021년도)	4차년도 (2022년도)	5차년도 (2023년도)	계	
세 입							
세 출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	
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	
재원조달	소 계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	지방세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구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

의안번호	제 27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8호 규정을 수정안 이전의 규정 대로 하고,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제2조제1호, 제2호 및 제8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수정
- 제2조제5호, 제6호 및 제7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수정
- 제6조제2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하나”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의 제8호 중 “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”을 “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”로 수정
- 제8조제3항 중 “민원사무처리”를 “민원처리”로 수정
- 제13조제3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수정
- 제13조의2제3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수정
- 제5장을 삭제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있음

##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2호 및 제8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, 제6호 및 제7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하나”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의 제8호 중 “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”을 “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민원사무처리”를 “민원처리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3조의2제3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5장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 (정의)</p> <p>1. “인터넷”이라 함은-----</p> <p>2. “인터넷시스템”이라 함은--</p> <p>5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-----</p> <p>6. “비밀번호”라 함은-----</p> <p>7. “홍보행사(이벤트)”라 함은--</p> <p>8. “인터넷방송”이라 함은--</p> <p>제6조 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-----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-----</p> <p>8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<u>주2회 이상</u> 게시하거나 비슷한</p>	<p>제2조 (정의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 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<u>같거나 유사한</u> 내용 <u>반복적으로</u> 올리는 게시물을</p>	<p>제2조 (정의)</p> <p>1. “인터넷”이라-----</p> <p>2. “인터넷시스템”이라--</p> <p>5. “개인정보”란-----</p> <p>6. “비밀번호”란-----</p> <p>7. “홍보행사(이벤트)”란--</p> <p>8. “인터넷방송”이라--</p> <p>제6조 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-----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-----</p> <p>8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<u>똑같은</u> 내용을 <u>주2회 이상</u> 게시하거나 비슷한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</u></p> 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</p> <p>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<u>민원 사무처리</u>에 대한-----</p> <p>제13조(참여마당 운영)</p> <p>③ 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-----</p> <p>제13조의2(인터넷 방송 운영)</p> <p>③ -----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제5장 전자우편 ID보급</u></p>	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참여마당 운영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의2(인터넷 방송 운영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<u>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</u></p> <p>제8조(전자민원 창구 설치·운영)</p> <p>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<u>민원 처리</u>에 대한-----</p> <p>제13조(참여마당 운영)</p> <p>③ 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-----</p> <p>제13조의2(인터넷 방송 운영)</p> <p>③ -----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(삭제)</p>

# 충청북도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·운영하고자 함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통합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활동의 소요 경비 등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1조 (목적), 제2조 (정의), 안 제3조 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
- 안 제6조 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, 안 제8조 (전자민원 창구 설치 운영)
- 안 제9조 (인터넷 민원접수 항목의 변경)
- 안 제12조 (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)
- 안 제14조 (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사항), 제16조 (개인정보보호)
- 안 제18조 (시행규칙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연중

### 나. 추계 결과

- '19년부터 향후 5년간 연 420,000천원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비 10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구 분	계	1차년도 (2019년도)	2차년도 (2020년도)	3차년도 (2021년도)	4차년도 (2022년도)	5차년도 (2023년도)
세 출	2,10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

## 6. 작성자 : 행정국 정보통신과 과장 유경수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도)	2차년도 (2020년도)	3차년도 (2021년도)	4차년도 (2022년도)	5차년도 (2023년도)	계
세 입						
세 출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재원조달	소 계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수입	소 계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	지방세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2,10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